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설치 의무화 및
청소년동반자 배치 및 처우개선 관련 사항 규정 등 〉
■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749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청소년 긴급·고위기 상황 대응 및 조사 등	3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설치 의무화 등	12
3.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률에 규정 및 추가 등	16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동반자 배치 및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 관련 사항 규정	2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희정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 23.
3. 회 부 일 : 2025. 1.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런데 대다수 지역의 청소년안전망이 자살·자해·폭력 등 위기청소년 긴급·고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휘·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큰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긴급·고위기 상황에 처한 위기청소년 중 상당수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는 청소년안전망에 전담기구, 전담공무원이 부재하다 보니 긴급·고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현장출입 등 행정조사와 관계기관 긴급회의 소집 요구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소년복지심의위원

회 또한 긴급·고위기 상황 대응방안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고 정례적·형식적 회의 운영에만 치우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보임.

이에 덧붙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배치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의 경우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상담·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업무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동종 업무 종사자에 비해 낮아 이직률이 높고 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임. 결국 청소년동반자의 부족으로 인해 위기청소년의 개별적인 위기상황 파악과 그에 맞춘 보호·지원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위기청소년 긴급·고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의 지휘·감독 기능 강화, 청소년동반자의 확충과 보수 수준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의3, 제29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청소년 긴급·고위기 상황 대응 및 조사 등

개정안은 청소년 긴급·고위기 상황 및 고위기청소년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개입을 통해 청소년을 적시에 보호하고 위기·피해 등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며,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긴급회의 소집 절차를 규정하고, 전담공무원이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의 현황 파악 및 고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현장 출입·조사, 질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제8호, 제12조의3 및 제45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u>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u> ”이란 <u>청소년의 자살시도·자해·범죄·폭력·비행·일탈·학대·가족갈등·가정해체·가출·빈곤·고립, 정신적·심리적 장애 또는 그 밖에 중대한 사고·피해 등의 상황으로서 방지될</u>

<신 설>

<신 설>

경우 청소년을 적시에 보호하기
어려워지거나 위기·피해 등의
정도가 심각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을 말한다.

8. “고위기청소년”이란 위기청소
년 중에서 청소년 긴급·고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을 말
한다.

제12조의3(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대응 및 조사) 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이 발생
한 때에는 신속한 개입을 통해
청소년을 적시에 보호하고 위기
·피해 등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관
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
년 긴급·고위기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대응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 소집을 요
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긴급회의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제3항에 따른 긴급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제때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긴급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명된 긴급회의 소집권자는 지체 없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전담공무원은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의 현황 파악 및 고위기청소년과 그 밖에 관련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 ①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

1. · 2. (생략) ② ~ ④ (생략)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¹⁾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안전망을 구축·운영중이며, 청소년안전망에 요구되는 주요 기능의 수행은 청소년안전망 내 필수 연계기관²⁾ 중 하나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중임.

개정안은 “청소년의 자살시도·자해·범죄·폭력·비행·일탈·학대·가족갈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등·가정해체·가출·빈곤·고립, 정신적·심리적 장애 또는 그 밖에 중대한 사고·피해 등의 상황으로서 방치될 경우 청소년을 적시에 보호하기 어려워지거나 위기·피해 등의 정도가 심각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을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으로, 위기청소년 중에서 청소년 긴급·고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을 ”고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개입을 통해 청소년을 적시에 보호하고 위기·피해 등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대응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전담 공무원이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의 현황 파악 및 고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현장 출입·조사 및 질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으로 고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입 및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개정안은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및 “고위기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청소년 위기상황”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위기청소년”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자살시도·자해, 소년범, 약물·인터넷 중독 등 고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고위기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청소년상담채널 1388, 학교, 경찰서 등에서 최초 위기청소년 상담 시 청소년사업 지침 내 위기 스크리닝 척도³⁾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기 정도를 판단하고 있으며, 고위기청소년의 신속발견·지원을 위한 ‘긴급대응체계’⁴⁾를 운영 중이며 청소년의 위기 수준 단계별로 추진 절차를 마련하여 대응중이라고 함.

정의규정은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위기청소년과 고위기청소년의 구별은 청소년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의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정의조항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개정안은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긴급회의 소집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이 발생

3) 위험요인 영역,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으로 질문 구성(연령대별로 다른 척도 활용)

4) ‘기초센터-광역센터-지자체/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여성가족부’ 순의 보고·전달체계 정립에 따라 신속한 위기상황 파악 및 체계적인 개입·지원 제공

한 때에는 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대응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긴급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제때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긴급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하고 지명된 긴급회의 소집권자는 지체없이 긴급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상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둘 수 있으며,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임.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다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관하여 심의 등을 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 다수가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 특성상 신속한 업무처리 보다는 전문성·공정성 등을 기하기 위한 사항에 적합함.

그런데, 고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지원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사항과 달리 개별적으로 고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대응하는 과정은 신속·긴급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긴급회의 절차가 필요한 지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개정안은 전담공무원이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의 현황 파악 및 고위기청소년과 그 밖에 관련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입·조사, 질문 및 자료제출 요구 등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데,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의 현황 파악 및 고위기청소년과 그 밖에 관련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와 관계인 즉, 조사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자칫 자의적 집행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현재도 청소년들이 처한 다양한 위기상황에 기반하여 초기 상담 시 위기 스크리닝 등을 통해 위기유형 및 위기도에 따라 집중지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고 있으므로 별도 청소년 긴급·고위기 상황 및 고위기청소년을 정의하는 개정 실익이 없으며,

고위기청소년과 같이 현장에서의 시급한 대응 및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보다는 실무위원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에서의 즉

각적 개입이 바람직하므로 심의위원회 긴급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신중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인에게 전담공무원의 조사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시 위기청소년과 구분하여 긴급·고위기상상황과 위기상황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담공무원 조사 과정에서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국민에 대한 침익적 사항으로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구광역시 북구는 긴급·고위기상상황 발생 시 전담공무원의 현장 출입·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청소년사업 업무의 관련 지침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임.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설치 의무화 등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로 하여금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함) 전담기구를 필수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u><신 설></u>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① ----- ----- ----- ----- -----추진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전문인력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 <u>민간 전문인력</u>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u>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u>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u>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u>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 ----- ----- ----- ----- -----<u>제3항에 따른 민간 전문인력</u>-----. ⑤ <u>전담기구</u>----- -----<u>전담공무원의 임용 및 배치</u>----- -----.
--	---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⁵⁾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

-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3(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인력배치) ①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공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민간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전담 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담공무원 배치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4년간(2020~2023년) 사업비를 국비 지원(5:5 매칭)하였고,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가점으로 반영하였음.

그런데, 청소년복지 담당 부서 내 1인을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부서 전체 인원을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반면, 전담공무원이 전혀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공무원 지정 현황을 보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시·군·구가 180개에 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공무원 지정 현황 >

(‘25년 기준, 단위: 명)

구분	0명	1-2명	3-4명	5-6명	7-8명	9명 이상
시·도	3	6	3	0	2	3
시·군·구	180	44	0	2	2	0

자료: 여성가족부

이에 개정안은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및 전담공무원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의 효율성 및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및 전담공무원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전담기구 설치 및 전담공무원 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서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현재와 같이 재량규정으로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행정기구 설치 및 인력 운영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율적 판단하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임.

대구광역시 북구는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전담기구 설치 운영 여력이 부족하고, 자원이 열악하여 개정안에 따라 전담기구 및 전담공무원이 필수적으로 설치되더라도 운영실익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임.

세종특별자치시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인구 수, 아동 전담인력 등 각 현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두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임.

3.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률에 규정 및 추가 등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심의사항에 청소년 긴급·고위기 상황의 현안 파악, 원인 분석, 대응방안 및 고위기청소년의 긴급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위기청소년 발견·보호·지원 및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대응 관련 사례검토와 개선방안 도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 <u><신 설></u>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 ----- <u>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 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에 관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와 협의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u> ② <u>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1. <u>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지원 관련 정책과 조례·규칙 제·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u> 2. <u>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u>

②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u>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u> 4. <u>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의 현안 파악, 원인 분석, 대응방안 및 고위기청소년의 긴급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u> 5. <u>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u> 6. <u>위기청소년 발견·보호·지원 및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대응 관련 사례검토와 개선방안 도출에 관한 사항</u> 7. <u>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 ----- ----- ----- -----.
---	--

현행법⁶⁾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현행법 시행령 제5조⁷⁾에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 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와 협의하기 위한”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일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심의사항에 청소년 긴급·고위기 상황의 현안 파악, 원인 분석, 대응방안 및 고위기청소년의 긴급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위기청소년 발견·보호·지원 및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대응 관련 사례검토와 개선방

-
-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안 도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개정안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심의하기 위하여”가 아닌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와 협의하기 위한”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명칭은 현행과 같이 심의위원회로 하고, 개정안 제2항에서는 “심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서로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정안 제2항의 심의사항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심의하기 위하여”가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음,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사항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심의사항에 청소년 긴급·고위기 상황의 현안 파악, 원인 분석, 대응방안 및 고위기청소년의 긴급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위기청소년 발견·보호·지원 및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대응 관련 사례검토와 개선방안 도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심의사항에 추가로 포함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

현행법은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실체규정은 제5장(위기청소년 지원)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실체규정

8) 제13조(상담 및 교육),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과 관련한 내용 및 정책 등을 심의하는 구조임.

그런데, 개정안은 고위기청소년을 신속하게 발견 및 대응하도록 하는 외에 고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실체규정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고위기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심의의 내용 및 목적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청소년 긴급·고위기 상황의 현안 파악, 원인 분석과 위기청소년 발견·보호·지원 및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대응 관련 사례 검토는 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과 지원정책 또는 지원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현행(시행령 제5조)	개정안(법 제10조제2항 신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5.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1.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지원 관련 정책과 조례·규칙 제·개정 제안에 관한

현행(시행령 제5조)	개정안(법 제10조제2항 신설)
관한 사항 <u><추 가></u> <u><추 가></u>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사항 4. <u>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의 현안 파악, 원인 분석, 대응방안 및 고위기청소년의 긴급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u> 6. <u>위기청소년 발견·보호·지원 및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대응 관련 사례검토와 개선방안 도출에 관한 사항</u>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고위기 청소년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고위기청소년 긴급대응과 관련한 효율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보다는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빠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동반자 배치 및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 관련 사항 규정

개정안은 청소년동반자를 정의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동반자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동반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보수지급 실태 및 적정 인건비 기준의 준수율 등에 대한 조사·공표, 적정 청소년동반자 배치 및 인건비 기준 준수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등 처우개선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9. “ <u>청소년동반자</u> ”란 <u>위기청소년을 주기적으로 직접 개별 방문하는 방식을 통해 위기청소년 발굴·상담·지도·보호·지원 또는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u>
<u><신설></u>	<u>제29조의2(청소년동반자의 배치 및 지원 등) ① 위기청소년의 개별적</u>

인 위기 상황, 위기 정도 및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보호 및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동반자를 둘 수 있다.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동반자를 두는 경우 해당 지역의 청소년 인구 분포 및 청소년동반자의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동반자의 업무 강도 및 동종 업무 종사자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동반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소년동반자를 고용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별 청소년동반자의 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의 준수율 등에 관하여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제2항에 따라

	<u>적정 수의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고 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u> <u>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동반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보조할 수 있다.</u>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⁹⁾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 복지지원기관으로 2025년 7월 기준 240개소가 운영중임.

< 시·도 및 시·군·구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

(’25년 7월 기준, 단위: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0	26	16	10	11	6	3	6	1	33	14	13	16	15	23	22	22	3

주. 시·도센터(17개), 시·군·구센터(223개)

자료: 여성가족부

-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안전망 운영 사업 중 하나로 찾아가는 청소년상담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지자체 보조, 보조율 50%)으로, 2025년 예산에는 136억 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채널 1388, 학교, 경찰서 등을 통해 연계된 중·고위기 청소년(자살·자해, 소년범, 약물·인터넷 중독, 은둔형 외톨이 등)에 대한 위기 스크리닝 실시 결과 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여 청소년동반자가 해당 청소년을 방문하여 1:1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청소년 협력자원을 발굴·연계하며 청소년과 관계 형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동반자 배치 현황을 보면, 2025년 7월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치된 청소년동반자는 1,381명이며, 이 중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인원은 443명, 시간제(주 12시간) 근무 인원은 938명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배치 현황 >

(’25년 7월 기준, 단위: 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81	192	105	71	54	44	53	41	9	360	48	48	60	31	66	82	98	19

주. 전일제(443명), 시간제(938명)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사업 안내’를 통해 매년 시·도별 청소년동반자 적정 배치인원 기준 및 사례관리 목표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고려하여 인원 배치를 추진중¹⁰⁾이라고 함.

개정안은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 배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동반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현행법 제29조제4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제14조제4항) [별표 1]에서는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4명 이상의 직원,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별표 2]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¹¹⁾의 업무 종류 또는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상담복지

10) 모든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1명 이상의 청소년동반자 배치 운영을 권고

11) 센터장, 관리 업무 수행 직원,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 직원(상담인력), 행정업무 수행 직원, 생활 지도 직원(생활지도상담원)

분야 학위 취득 또는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있거나 청소년 관련 자격증(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소지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종사자와 달리 법령상 일정한 자격기준을 요하지 않는 청소년동반자에 대해서만 배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과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보수지급 실태 및 적정 인건비 기준의 준수율 등에 대한 조사·공표, 적정 청소년동반자 배치 및 인건비 기준 준수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처우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청소년동반자에 대하여만 규정하는 것은 다른 종사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¹²⁾의 경우,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과 관

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련한 대상을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를 전부 포함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 제29조의2제1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재량사항) 규정하면서 제2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동반자를 두는 경우 해당 지역의 청소년 인구 분포 및 청소년동반자의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의무사항)고 규정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유형 중 하나인 청소년동반자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전체 종사자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청소년동반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 신설은 이미 현행법에 따라 재정지원¹³⁾을 하고 있어 개정 실익이 낮고, 타 종사자와의 형평성 및 재정 운용의 경직성 우려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임

대구광역시에서는 청소년동반자 업무의 보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종사자 보수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특정 업무에 차별을

13) 2025년 청소년동반자 관련 예산은 137억원 규모임
- 전일제 동반자: 연 33,014천원, 시간제 동반자: 연 12,264천원

두기보다는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645

【참고자료 1】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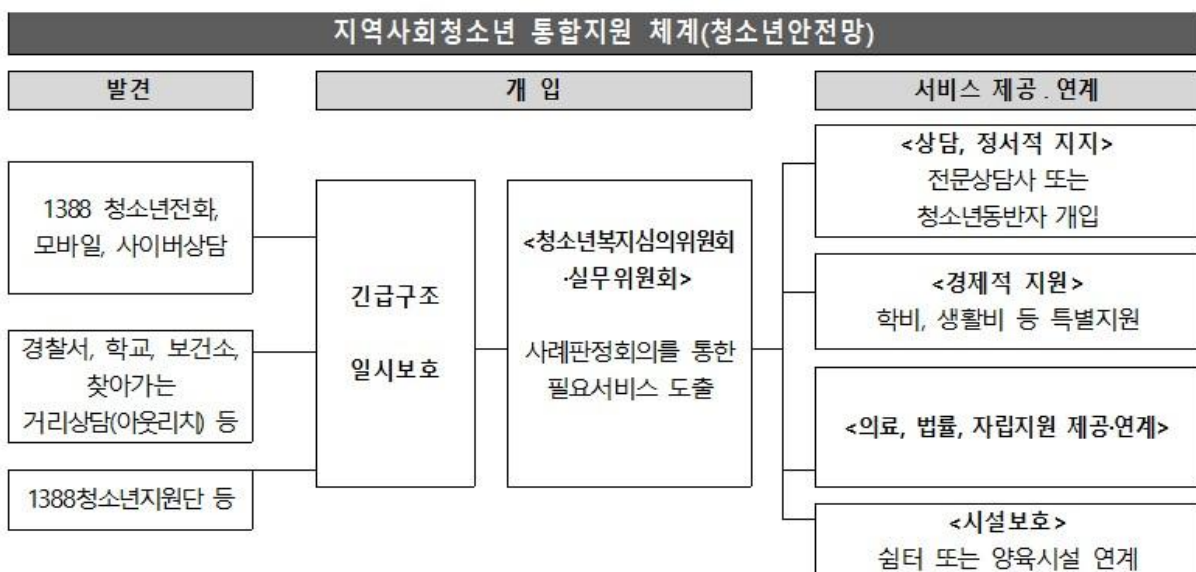
□ 개요

- (역할) 청소년안전망* 내 필수 연계기관**으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은 관련기관 협의체로 청소년안전망에 요구되는 주요 기능의 수행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
 - ** 필수연계기관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 제29조
 - *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2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설치) 지방자치단체별(시·도, 시·군·구)로 설치·운영

(25년 기준, 단위 :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0	26	16	10	11	6	3	6	1	33	14	13	16	15	23	22	22	3

- (인력) 시·도 센터 14명(국비지원 6명), 시·군·구 센터 5명(국비지원 2~3명) 이상
- (운영체계) 청소년안전망 내 구조-개입-서비스제공 및 연계 수행



【참고자료 2】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 추진개요

-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 (대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채널 1388, 학교, 경찰서 등을 통해 연계된 중·고위기 청소년*
 - * (예) 자살·자해, 소년범, 약물·인터넷 중독, 은둔형 외톨이 등
- (선정 절차) 위기 스크리닝* 실시 결과 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청소년동반자 배치
 - * 위험요인(개인, 가정, 학교 등) 및 문제행동 영역(인터넷중독,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별 평가 실시
- (지원 사항) 청소년동반자가 방문하여 1:1로 상담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의 청소년 협력 자원을 발굴·연계하며 청소년과 관계 형성을 통한 지속적 지원

□ 추진 경과 및 지원 실적

○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 ~ '25
동반자수	계	1,066	1,146	1,261	1,308	1,349	1,354	1,363	1,398
	전일제	222	256	307	362	410	410	424	459
	시간제	844	890	954	954	939	939	939	939

* 동반자 근무형태 : 전일제(주 40시간), 시간제(주 12시간)

○ (지원 실적)

(단위 : 건,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혜 청소년 수	41,392	43,246	36,974	42,023	42,110	41,913	53,807
지원 서비스	1,088,883	1,163,306	1,325,656	1,431,901	1,623,570	1,689,011	1,861,377

□ 운영 체계

